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박윤경 의원 외 1인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 .

발 의 자: 박윤경·장미경 의원(2인)

찬 성 자: 강승수·김영태·김원섭·김재우
김정도·김정미·김종화·김지식
김춘남·김현경·김효석·소진혁
신용하·양진오·유승현·이상호
이정호·이정희·이탕모·임명섭
장세구·장진호·전희정 의원(23인)

1. 제안이유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을 확산하고,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안 제11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2조, 제4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나. 부서검토: 아이돌봄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35조”를 “제36조”로 한다.

제23조 앞의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33조 앞의 “제5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제38조로 하고,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하며,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3조의3)제3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아동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교육돌봄국장”을 “아동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1항제2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3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3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u>제35조</u> 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u>제36조</u> ----- -----. 8. (현행과 같음) <u>제11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 생활) ①</u>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u>②</u> 시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u>제11조 ~ 제13조의2</u> (생략)	<u>제12조 ~ 제14조의2</u>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의2까지와 같음)
<u>제13조의3</u> (실무추진단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	<u>제14조의3</u> (실무추진단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되고, 부단장은 사회복지국
장이 된다.

④ (생 략)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신 설>

제14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
래교육돌봄국장으로 한다.

1. ~ 5. (생 략)

6. 제23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
회 위원

제17조 ~ 제22조 (생 략)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신 설>

제23조 (생 략)

제24조(기능) ① 아동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 략)

----- 아동 관련 업
무담당 국장-----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제1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

----- 아
동 관련 업무담당 국장-----.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

제18조 ~ 제23조 (현행 제17조부
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4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5조(기능)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u>제12조</u>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 7. (생략) ② (생략) <u>제25조</u> ~ <u>제32조</u> (생략) <u>제5장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u> <u>모니터링</u> <u><신설></u> <u>제33조</u> ~ <u>제36조</u> (생략) <u>제6장 보칙</u> <u><신설></u> <u>제37조</u> (생략)	2. ----- <u>제13조</u>----- ----- -----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26조</u> ~ <u>제33조</u> (현행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와 같음) <u><삭제></u> <u>제5장 아동영향평가 및</u> <u>아동권리 모니터링</u> <u>제34조</u> ~ <u>제37조</u> (현행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와 같음) <u><삭제></u> <u>제6장 보칙</u> <u>제38조</u> (현행 제37조와 같음)
--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 ② (생략)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 1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한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아이돌봄과

조 례 명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 제4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 주요 사항 ○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안 제11조)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아동의 발달권 및 놀이·문화 향유권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아동이 일상 속에서 놀이와 배움, 문화 경험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소요예산: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재정수반(비용 발생) 요인 없음 (‘26년 기 편성된 예산)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기존 예산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026년 법제업무편람 62p 비용추계서 첨부기준 참조)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